

8. 土地去來契約申告區域指定

건설교통부공고제1997-311호 1997. 9. 6

주요내용

1. 대상지역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지역중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

시·도	대 상 지 역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태전동, 읍내동, 동천동, 매천동, 팔달동
경 기 도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화도읍 군포시 전역(대야동 제외) 의왕시 전역
강 원 도	동해시 부곡·삼흥·삼화·쇄운·구호·호현·내·지가·귀운·심곡 ·초곡·괴란·만우동 삼척시 원덕읍 이천·옥원·노경·산양·사곡·가곡리 철원군 철원읍, 동송읍, 근북면 전역 갈말읍 동막·정연·상사·내대·토성·지경리 김화읍(감봉리 제외) 근남면 마현·풍암·양지·사곡리, 서면 외수리 고성군 거진읍, 현내면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외속리면, 회북면 괴산군 장연면 음성군 감곡면
충 청 남 도	논산시 동지역 전역 금산군 금산읍, 제원면, 추부면 서천군 장항읍(녹지지역 제외) 서천군 마서면, 서면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신평리, 시량리

시·도	대 상 지 역
전 라 남 도	영광군 법성면
경 상 북 도	포항시 오천읍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구룡포읍·동해면(기 허가구역 제외), 장기면 포항시 북구 학산·득락동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상주시 외담·현신·도남동 성동동(기허가구역 제외) 함창읍, 공검면
경 상 남 도	진주시 이반성면 밀양시 성남면, 초동면 함안군 함안면(강명리 제외) 창녕군 창녕읍 신촌·용석·외부리 남지읍 신전·성사·아지·고곡·수개·시남·칠현·반포· 대곡·월화리 계성면 광계·봉산리 산청군 산청읍, 생초면

2. 지정기간 : 1997년 9월 7일~1999년 11월 23일

3. 신고를 하여야 할 면적

지 역	면적	
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330m ² 이상
	공 업 지 역	1,000m ² 이상
	녹 지 지 역	660m ² 이상
도시계획구역밖	농 지	5,000m ² 이상
	임 야 및 초 지	10,000m ² 이상
	기 타	1,000m ² 이상